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 일시 : 2003년 12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순서 :

1. 여는 말씀(문대골 목사)

2. 규탄 발언

- 송두울 교수 구속 건(송두울 교수 대책위 운영위원장 신정완 교수)
-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및 아주대 조직사건 조작 규탄(학생 대표)
-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 연행, 구속 규탄(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전국민중연대 /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불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시민사회연대/ 김용찬 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인문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통일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기수송환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통일연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운동연구소/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통일민주협의회/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총 97개단체)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마친 후 4시간 여 만에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전격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지난 날 몸담고 있던 범민련 활동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비단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뿐 아니라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속, 연행사태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검찰이 발표한 불구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4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연행, 구속되었으며, 44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수배조치되었습니다. ^(이 한총련) 또 11월 28일 법원은 '한총련=친북단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적단체로 재 낙인찍었으며, 12월 4일 아주대학교 졸업생 8명이 2시간 사이에 모두 연행되어 '자주대오'라는 조직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최근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을 볼 때,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친북이적시비를 붙이면서 냉전수구의 잔재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5.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을 끝끝내 폐지시키지 않으면 냉전수구세력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유사 사례가 계속 되풀이 될 것이 우려되는 바,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하는 각계 사회단체들이 별첨과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문의 : 통일연대(02-831-6822), 국보철 국민연대(김성란 사무총장 : 011-594-7665)

7. 감사합니다.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한총련 피해사례>

<별첨3. 통일연대 민경우 처장 연행, 구속사례>

<끝>

<별첨1> 기자회견문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선고판결마다 다시금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재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총련 관련 무더기 수배자와 구속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범국민적 동의로 전면 폐지의 수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자 사문화된 쓸모없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지탱해온 반복이데올로기는 6.15공동선언과 한해 수십만명에 달하는 남북간 교류, 왕래를 통해 유명무실해 졌으며, 이제 국민들 속에 북은 통일의 동반자이지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또한 민주화의 진전속에서 양심,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제반 권리와 인권을 심각히 유린해 온 국가보안법은 그 설자리를 상실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과 구속사태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올 한해 수구냉전진영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어온 역사회귀를 위한 움직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새로운 시대, 보다 발전된 사회적 단계로 변화하는 길목에는 언제나 극우보수진영의 극단적인 저항이 있었고 그 최고의 수단은 언제나 국가보안법이었다.

지금 우리는 수구와 냉전이나 진보와 통일이나 하는 역사의 큰 갈림길에 서서 수구보수진영의 반민주와 반통일에 대한 완고한 집착과 반역사적 저항을 목도하고 있다. 2003년 한해를 돌아볼 때, 극우보수진영은 매 계기마다 반복논리와 색깔론을 앞세운 돌출행동으로 국민들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면서 끊임없이 역사회귀를 시도했다. 특히 대북송금특검사건과 한총련 합법화논쟁,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송두율 교수 사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보수정치인들과 수구언론, 극우단체들의 메카시즘적 공세는 냉전 역사의 끝자락에 선 수구보수진영의 정치적 생존을 건 총단결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냉전논리와 그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이은 구속사태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내 공안세력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에 의한 의도된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임숙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연행사태가 사회민주화의 인권영역의 전면적 후퇴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피땀으로 일구어온 사회민주화 역사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엄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최근 테러방지법제정과 집시법 개악 등,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민주화와 인권 영역의 총체적 후퇴현상은 사회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유포시키며 국민적 비판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득세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냉전논리가 모든 것을 억압해온 반민주와 반인권의 지난 역사를 되살려 내려는 것으로, 국민의 피땀이 녹아있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그 성과들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그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는 공안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이 현 상황을 비상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그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어리석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을 때,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민주화투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연행구속사태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매 선거시기마다 국가보안법이 수구냉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만일 공안세력에 의한 최근의 국가보안법 부활시도가 이러한 구시대적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역풍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정치적 생명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지난 55년동안 냉전시대를 풍미하며 온갖 못된 짓을 저질러 온 극우보수세력들, 공안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국민을 희롱하고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 사문화의 단계를 넘어 2004년을 실질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사회적 기저를 화해와 통일의 기저로 전면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공안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연행행렬을 즉각 중단하라
2. 민경우, 김형주 등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3.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4.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2월 10일

1.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조작 사례

1) 사건경위

- 12월 3일 오전 7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자주대오구성))
- 아침 7시 30분 2004년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당선자 주경태(23)의 자취방에 들이닥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연행. 방에 있던 '자주민보' 등의 책과 문서 등을 가져감.
- : 출근을 준비하고 있던 노종욱(29)의 자취방에 들이닥쳐 연행, 컴퓨터를 가져감.
- : 출근을 한 노희환(28)의 직장으로 찾아와, 함께 자취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가져감.
- : 자취방에서 자고 있던 하재용(27), 전세훈(25), 황영석(22)를 연행하고, 컴퓨터와 문서 등을 모두 가져감.
- : 군복무중이던 김용희(25, 청주교도소 교도관)와 정윤철(24, 공익근무요원)을 연행해감.
- 12월 4일 1시 8명 전원에게 구속영장 청구
- 12월 5일 영장실질심사 후 주경태, 황영석 학우는 불구속 석방, 나머지 6명은 구속영장 발부
- 12월 8일 경기도 파주에서 군 복무중이던 김우석(29)과 장교로 대구에서 군복무중이던 최준구(27)를 기무사에서 연행함. 5명더 추가 연행 예정, 조만간 내공이로.

2) 연행자 명단 및 상황

- 노종욱(29세, 2001년 학생복지위원장, 현재 회사원, 결혼준비중)
- 노희환(28세, 2001년 공과대학 학생회장, 현재 회사원)
- 하재용(27세, 2002년 공과대학 학생회장, 현재 아주대 재학중, 현재 졸업준비중)
- 정윤철(24세, 2001년 경영대학 학생회장, 현재 군복무중)
- 전세훈(25세, 현재 아주대 재학중, 졸업준비중)
- 김용희(25세, 2001년 동아리연합회 회장, 현재 군복무중)
- 주경태(23세, 2003년 환경도시공학부 학생회장, 2004년 공과대학 부회장 당선) - 불구속 수사 중
- 황영석(22세, 현재 아주대 휴학중) - 불구속 수사 중
- 김우석(29세, 98년 경영대 학생회장, 현재 군복무중) - 12월 8일 연행
- 최준구(27세, 2000년 총학생회장, 현재 장교로 군복무중) - 12월 8일 연행

3) 사건 전의 징후

아주대는 2001년 자주적 학생회 이후 2002년과 2003년 반운동권을 표방하는 총학생회가 건설됨. 2004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반운동권 선본에서 추천서 대필, 허위 유인물 배포, 한총련 완전 탈퇴 공약 등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반운동권 선본이 낙선함. 변호사 접견 시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돼서 바로 터뜨렸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함.

지난 9월 2001년 총학생회장 맹관호 학생 불법연행·구속사건이나, 항의집회 전원연행·구속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주대 조심해라, 큰 거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조직사건의 징후가 많이 보였으며, 사건 당일 이틀 전부터 학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전화기가 잘 터지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의 징후가 있었음.

4) 수원 보안수사대의 강압수사, 허위진술강요 내용을 폭로합니다.

12월 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난 주경태와 황영석의 증언에 의한 내용입니다.

① 주경태 학우의 증언에 따르면

- 심문의 주요내용은 '자주대오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생회활동을 '자주대오 활동'으로 탈바꿈시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대오 조직원이냐?” “아니다”

“학생회하지 않았냐?” “했다”

“그것이 바로 자주대오다” 라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 학생회에서 흔히 진행하는 '일꾼대회', '선본발대식'을 '자주대오의 애국자대회'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같은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 “자주대오 가입원서를 썼냐”고 물어보면서 “안썼다”고 하면, “그러면 학생회 활동을 왜 열심히 하게 되었느냐, 누구랑 했느냐” 등을 물어보면서 “가입원서를 안써도 그게 가입원서 쓴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진술서에는 그렇게 기술했다고 합니다.

- 또한 자주대오의 강령과 규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은 학생회의 일반적인 학생회칙에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 반파쇼투쟁들의 내용을 합쳐서 '자주대오의 강령과 규약'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직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강령과 규약이라는 것을 수사관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 영장실질심사때 판사가 '가입서도 없고 증거도 이렇게 불충분한 사건을 왜 터뜨렸냐'고 할 정도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물론 연행자중 누구도 가입원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학생회 운영회칙에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을 끼워넣은 다음, '이것이 너희 강령이다'라면서 허위증거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③ 황영석의 증언에 따르면

- “자주대오 아냐” “처음듣는 겁니다”

“그럼 조통위는 아냐” “그것도 잘 모릅니다”

“너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고 집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알지 않냐? 그게 바로 자주대오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 “학생운동, 학생회 활동은 자주대오 활동을 한 것이고 가입원서 쓴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술서에는 가입원서를 쓴 것으로 기술하였다고 합니다.

- '애국자대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출범식이나 8.15 통일대회, 선거준비 시기 때 갖는 모임 등을 '자주대오 애국자대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에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랑 학습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의식화되지 않았냐? 그게 바로 학습하는 거다”라고 몰아갔다고 합니다.

- 저학번이라서 연방제가 뭔지도 모르고 NL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으면 이것이 '자주대오'고 이것이 '유치해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 특히 저학번이라는 것을 이용 "좋은게 좋은거니", "이것은 요식행위다", "너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회유하였습니다.

- 결국 위와 같이 자신들이 짜놓은 진술서에다가 결국 부정했던 진술내용을 긍정적인 것으로 하여 진술서에 합의하게 했다고 합니다.

>> 정리해보면,

- 보안수사대에서는 2002년에 2001년 동아리연합회장이었던 김용희 연행시 조사내용 때 거론된 이름을 중심으로 조직을 짜 맞추려고 하고 있으며

- 자신들이 작성해 놓은 모범답안(진술서)를 가지고 유도심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며,

- 연행자들이 이것을 부정하였으나,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범답안대로 강요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 이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 "그게 그거다"라는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서로 격리된 채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들이밀면서 "너도 다 붙어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며,

- 그러나, 그 진술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답변이 거의 비슷하고, 특히 01학번의 진술서에는 이 학생이 어려서 알수도 없는 '결사체' 등의 단어 등이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 이는 뚜렷한 물증도 없고 확실한 진술내용도 없는 수원보안수사대가, 자신들의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연행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또, 현재 6명의 구속자에게 매일 장시간(아침 10시경부터 저녁 9시경까지)의 수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12월 8일 2명 추가연행 후 상황

- 연행 사실이 확인된 후 빠르게 면회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특전사 헌병대에 전화를 했으나 머뭇거리면서 부인을 함. 그러다가 계속 추궁을 하자 '내일 연락이 갈것이다'라고만 하였으며 그곳을 찾아가는 방법을 묻자 계속 '내일 연락이 가면 그때 가르쳐 주겠다'고 함.

현재 연행된 2명은 특전사 헌병대에 있으며, 8일 저녁에 부모님과 졸업생들이 몇시간 동안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면회가 되지 않음.

- 또한 6명의 구속자들은 현재도 경기도보안수사대에서 장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 면회결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밤12시 정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구속자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강압에 의해 인정했던 허위진술서에 대해서 다시 고쳐줄 것을 요구하자 진술을 번복한다며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진술서를 집어던지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5) 학생들을 탄압, 학생회를 말살하려는 수원지검 정지영 검사를 규탄합니다.

정지영 검사는

- 한신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불법연행 및 구속사건

- 아주대 2001년 총학생회장 맹관호 불법 연행 및 구속사건

- 위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 전원 연행 사건(합법집회였으며, 가이드 라인을 넘은 적이 없음)

- 전원 연행 후 2003년 동아리연합회 회장 구속기소사건(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

- 이번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음모 담당검사

이처럼 증거없이 학생운동을 말살하고 탄압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정지영 검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 11기 한총련 탄압 사례

- ▶ 9월 11일(추석날) 2001년 아주대 총학생회장 맹관호 학생 연행
 - ▶ 10월 1일 11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임의규정, 핵심 간부 체포 영장 발부
 - ▶ 10월 3일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용석 학생 연행
 - ▶ 10월 5일 경북대 총학생회장 최성택 학생 연행
 - ▶ 10월 7일 명지대(서울) 총학생회장 김민선 학생 연행
 - ▶ 10월 9일 경원대 이종남 학생 연행. 연행과정에서 말리던 주변 여학생들에게까지 폭력 행사
 - ▶ 10월 19일 2002년 대경총련 의장 추민석 학생 연행
 - ▶ 10월 24일 광주대 총학생회장 장효정 학생 연행
 - ▶ 10월 24일 2003년 경인총련 의장 명지대(용인) 총학생회장 최낙권 학생 연행
 - ▶ 11월 2일 2003년 동아대학교 총학생회장 문옥주 학생 연행!
 - ▶ 11월 4일 2003년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진희 학생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강제 연행
 - ▶ 11월 4일 2003년 창원대 총학생회장 김소영 학생 창원 대동백화점 앞에서 연행!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도 않는 학우를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
 - ▶ 11월 10일 2003년 마창총련 의장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진애 학생 연행
학교 학생회관에 쇠파이프를 들고 침탈하여 폭력적으로 연행
 - ▶ 11월 24일 신라대 총학생회장 황민규 연행
- ~~11월 28일~~ 11월 28일 11기 한총련 대의원 첫 재판에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용석 학생에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근거로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
- 재판부는 또한 '11기 한총련이 범청학련을 통해 북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 조정을 받아 북의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있고, 빈번한 불법대북접촉 및 서신교환 등을 통해 하달된 북의 투쟁지침에 따라 11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별첨3>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 인행, 구속사례

1. 사건 경과

- 12월 1일 오후 3시 50분 경 장승배기 근처 버스안에서 서울 경찰청 수사 2부 형사들에게 전격 연행. 옥인동 대공분실에 구금.
- 12월 1일 오후 4시 경 자택 압수수색. 10여명의 형사들이 2시간에 걸쳐 50여점 압수.
- 12월 2일,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2000년~2003년의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고무찬양 혐의로 조사
- 12월 3일 오후 4시 경 구속영장 청구
-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약식 재판 진행. 구속영장 발부
- 12월 9일 검찰 조사 연장 신청

2. 혐의

- 2003년 6.15민족통일대축전 분산개최에 따른 북측행사 축전 전달과정에서의 절차 미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 적용
- 통일연대 활동 전 몸담았던 범민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회합통신, 금품 수수죄 적용(남북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중개과정에 대해 '이적행위'로 규정)

3. 입장

- 화해와 단합의 대상인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이미 시대의 퇴물로 사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추세에 맞게 북과의 교류협력, 접촉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현재 이적단체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이적규정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북의 화해와 단합,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내용들은 남북 민간단체간 공동행사 성사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그동안 통일부는 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묵인해 왔음.
- 공안당국이 지난 과거 활동을 지금에서야 문제삼는 것은 최근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부활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민간통일운동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반통일적 행각이다.